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4
----------	------

제출년월일 : 2010. 2. 10
제출자 : 안산시장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 및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 ('10.1.1)에 의한 시세의 세목 조정을 반영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을 규정함. (안 제12조)
- 나. '05.12.31까지 화물차로 등록된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 2m²미만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부칙 과세특례에서 자동차세액을 '10~'11년 2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다가 '12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2m²미만 차량이 '06년 이후 단종되고 바닥면적 2m²이상으로 변경·
출고되어 화물차로 등록되고 있고 동 차종은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되는 점
을 고려하여 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세율을 지속 적용토록
하고자 함 (안 제15조의2)
- 다. 시세 세목조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함. (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개정 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1. 6. ~ 2010. 1. 16.(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 (경기도 세정과-20113, '09. 12. 1)

○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
(경기도 세정과-20191, '09. 12.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 특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실·과		세 정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안상철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이종민
	담당자 성명·전화	신운호 (행정 2198)

신·구조문 대비표

